

● **경인지방우정청공고 제2025-2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에 의거 부과한 국유재산사용료 등을 체납하여 독촉장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국유재산사용료 등 체납자 공시송달

2. 근거법규

가.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및 제73조(연체료 등의 징수)

나. 국세징수법 제10조(독촉) 및 제31조(압류)

다.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라.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10조(서면에 따른 납입의 고지)

3.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2026. 1. 6.~ 2026. 1. 20.)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체 납 자		체 납 내 역		
성 명	주 소	징수결의번호	부과금액	징수과목명
(주)에이치비산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66*, 10*동 170*호(신도림동)	191031263	16,090,030	국유대여료
광주요양보호사 교육원(석정*)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12*, 2층(경안동)	191042195외 1건	35,019,120	변상금
광주요양보호사 교육원(석정*)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77번길 201-1*(천현동)	191042195외 1건	35,019,120	변상금

5. 공고기간 내에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에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가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인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31)8014-3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6일

경인지방우정청장